

# 60대 중소기업인들이 연간 낼 수 있는 이익 5억원에 대한 법인세, 소득세, 건보료 합산비교



박윤중 공인회계사 (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)

- (전)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, (전)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
- 공인회계사 · 경영학박사(마케팅조세전략, 경영학원론)
-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
- 다수우량기업 회계 · 세무고문(SK증권, 지오다노, 동서그룹 등)

가업승계 · 증여 · 상속자문  
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 
(829-7575)

1. 사업자의 각종 원가, 필요비용 뺀 개인가처분소득이 5억원이고 전액 종합소득 과세와 당  
년도 급여처리 또는 배당처분으로 가정
2. 만 60세이므로 국민연금 의무납부기간은 끝났다고 가정
3. 대표자이므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부과대상 제외함.

개념비교	개인사업자(종합소득)	법인사업자(급여나 배당)
최종이익	연 5억원	연 5억원
종합소득세	누진세율적용 6%~42% 9460만원+3억원 초과액의 40% = 1억7460만원 × 1.1 = <u>192,060,000</u> ㉠	연봉 3억원 : 6%~35% 적용 9460만원 × 1.1 = <u>104,060,000</u> ㉠
건강보험료	5억원 × 6.67% = <u>33,350,000</u> ㉡	건보료 3억원 × 6.67% = <u>20,010,000</u> ㉡
법인세	없음	건보료 차감 후 1.8억 × 10% × 1.1 = <u>19,800,000</u> ㉢
총액 배당시	추가 중소세	배당 160,190,000 × (1.11) 총액화 = 연봉 3억원에 추가소득세 = 177,810,900 × 40% × 1.1 = 78,236,796 - 배당세액공제 17,620,900 = <u>60,615,896</u> ㉣

총액 배당시	추가 건보료	6.67%(없음)	배당액에 대한 건보료 = 160,190,000 × 1.11 = 177,810,900 × 6.67% = <u>11,859,987</u> ⑤
총부담액		㉔+㉕ 225,410,000원	①+②+③+④+⑤ = 216,345,883

## 결론

- ① 사업자 귀속이익 5억원 정도까지는 개인과 법인의 부담액이 유사함(법인이익의 배당전 액처분이므로) : 법인이익 2억원에 대한 법인세 11% 부담구간이 있고, 전액 세액공제 받으므로 법인이 일부 유리함.
- ② 그러나 법인대표자 급여처리 후, 차익의 법인세를 납부한 후 향후연도에 배당받는 경우는 법인이 유리하며, 귀속소득이 5억원보다 높아지고, 법인유보액이 커질수록 개인부담율(= 42% × 1.1 + 6.67% = 52.87%)이 법인이익의 법인세율 22%보다 커서 사업운영자급 차원에서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함.



## 안세회계법인 업무분야와 특장

829-7575

대표이사/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박운종

- 회계감사 ① 소속공인회계사 110명 + 회계직원 200 = 310명의 성실한 전문가의 친절한 자문
- 세무대리 ② 대형회계법인에서 약 10년간 숙련된 전공업무별 전문회계사 지속적 양성
- 재무지문 ③ 2018년 매출액 435억원으로 180개 회계법인 중 10위권 실적 계속 유지중
- 경영컨설팅 ④ 서울 핵심지역과 광역시 총 20개의 사무소를 둔 전국단위 지역밀착 네트워크 구축
- 회계기장 ⑤ 전직원이 업무기획 · 계약 · 현장실행 · 최종보고서 작성 수행하는 전공정 책임자
- 창업지원 ⑥ 獨自創安(독립, 자율, 창업, 안전) 경영이념으로 투명한회계, 적법납세, 정도경영
- 가업승계 ⑦ 고객현장근무, 문제예방 파견과 재택자율근무가능, 유튜브 공익 200강의 진행중

〈전국 단위 Network 잠재고객의 모든 재경자문 요청(829-7557)시  
전국 조직망의 전문가가 즉시 방문상담 할 수 있습니다〉